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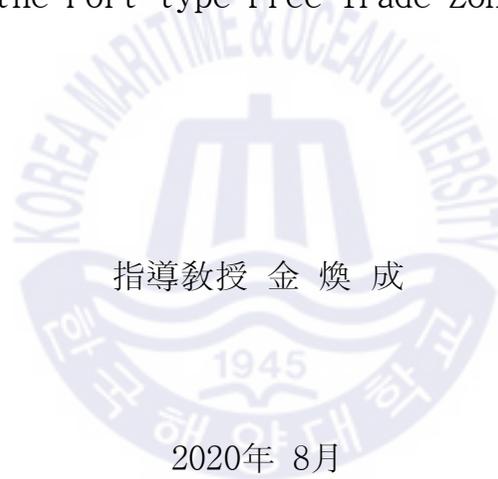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物流學碩士學位論文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Activating  
the Port type Free Trade Zone



指導教授 金 煥 成

2020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글로벌物流大學院

海運港灣物流學科  
朴 在 奎

本 論文을 朴在奎의 物流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 이 창 희



위 원 : 신 영 란



위 원 : 김 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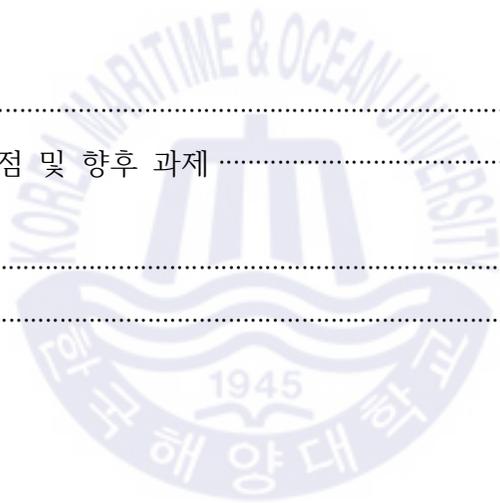
2020년 07월 18일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 목 차

List of Tables .....	iii
List of Figures .....	iv
Abstract .....	vii
<b>제 1 장 서론</b>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b>제 2 장 자유무역지역의 현황 및 화물관리절차</b>	
2.1 자유무역지역의 의의 .....	5
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현황 .....	7
2.3 자유무역지역의 화물관리 절차 .....	9
2.4 자유무역지역의 혜택 .....	15
<b>제 3 장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현황 및 평가</b>	
3.1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현황 .....	26
3.2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실적 평가 .....	31
3.3 선행연구 검토 .....	36
<b>제 4 장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b>	
4.1 수입물품 가공 후 국내외반출 Model .....	40
4.2 수입물품 분할·합병 후 보세운송 Model .....	43
4.3 전자상거래 글로벌배송센터 Model .....	45
4.4 비거주자 재고관리 Model .....	48
<b>제 5 장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b>	
5.1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 배경 .....	51

5.2 내국물품 관세영역 재반출 제도 개선 배경 .....	53
5.3 제도 개선에 대한 시뮬레이션 .....	54
5.4 법률 개정의 제안 .....	57
5.5 효과 분석 .....	64
5.6 시사점 .....	68
<b>제 6 장 결 론</b>	
6.1 연구요약 .....	71
6.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	73
<b>참 고 문 헌</b> .....	74
<b>감사의 글</b> .....	75



## List of Tables

[표 2-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8
[표 2-2]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9
[표 2-3] 관세법 준용규정	10
[표 2-4] 관세청 고시 및 훈령 준용 규정	11
[표 2-5] 내국물품 반입관련 신고	13
[표 2-6]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16
[표 2-7]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17
[표 2-8]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	19
[표 2-9]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	19
[표 2-10] 사용신고, 보수작업 및 사용소비신고의 비교	21
[표 2-11]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22
[표 3-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 비율	30
[표 3-2] 경제특구별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업 현황	32
[표 3-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수출실적	33
[표 3-4]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실적	33
[표 3-5] 선행연구 검토	38

## List of Figures

[그림 2-1]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	6
[그림 3-1] 자유무역지역의 연혁 .....	26
[그림 3-2] 자유무역지역 수출실적 비교 .....	34
[그림 3-3] 자유무역지역 물동량 추이 .....	35
[그림 4-1] 수입물품 가공 후 국내외반출 Model의 도해 .....	41
[그림 4-2] 수입물품 분할·합병 후 보세운송 Model의 도해 .....	44
[그림 4-3] 전자상거래 글로벌배송센터 Model의 도해 .....	47
[그림 4-4] 비거주자 재고관리 Model의 도해 .....	49
[그림 5-1] 일반 수출 형태 .....	54
[그림 5-2] 현행 비거주자재고관리 .....	55
[그림 5-3] 개선 후 비거주자재고관리 .....	57
[그림 5-4] 세액 산출 예시(1) .....	65
[그림 5-5] 세액 산출 예시(2) .....	65
[그림 5-6] 통합재고관리 절차 .....	67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재규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해운항만물류학과

## 초 록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에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변화 없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최근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과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물동량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방향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년간 프레임에 큰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고찰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본 제도가 정책적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올바른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의 혜택 및 운영실적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절차 및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과정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문헌 연구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된 법령, 저서, 논문, 학술지, 보고서, 간행물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록 자료들을 분석 및 검토하였다. 또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례 분석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 후 개선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물품 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 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비거주자재고관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Activating the Port type Free Trade Zone

Jae Kyu PARK

*Department of Shipping and Port Logistics  
Graduate School of Global Logistics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Abstract**

The free trade zon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arou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without significant changes from the free export zone established in 1970. Considering the increase trade volume in the port-type free trade zon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the free trade zone, compared to the recent decrease in the export performance of the industrial complex-type free trade zone and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iagnose the status by examining the role and operation status of free trade zones that have been in effect for 50 years without significant changes to the frame. In addition, it analyz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free trade zone system, examines whether it is operating properly for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system, and then attempts to derive the correct direction of the free trade area system. In particular, an

improvement plan for the free trade zone system that can activate the port-type free trade zone by analyzing the business model specialized for the port-type free trade zone will be presented.

A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the benefits and operating performance of the free trade zone was investigated, and the process of cargo management procedur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free trade zone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In the literature research, we analyzed and reviewed laws, books, papers, journals, reports, publications related to free trade zones, and related web-site registration materials. In addition, the business model of the port-type free trade zone was analyzed by case analysis to derive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and then to analyze the effect through simulation.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roving the system to allow the re-export of domestic goods into the customs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storing goods attracts foreign companies that want to use the port-type free trade zone as an international logistics hub and global delivery center. It is thought to be a very important factor and it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revitalizing the port-type free trade zone.

Key Words : Port-type Free Trade Zone, Domestic Goods Import Declaration, International Vendor Management Inventory.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WTO 체제하에서 글로벌 무역자유화 및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기업 간 경쟁은 국내를 넘어 국외로 확장되면서 기업 경쟁력 제고의 방안으로 생산의 분업화, 생산거점의 세계화, 글로벌 SCM 및 물류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고 감축,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 등 기본적인 경쟁전략 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이용한 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는 한 국가의 국경 내 일정 구획에 조세 감면, 각종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수출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및 종합보세구역 등 다양한 법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천연자원 및 산업자본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은 매우 협소하였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공무역수출 증대 및 경제 성장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1970년대에 외국의 자본 및 선진기술을 획득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수출자유지역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자유무역지역 제도에 이르게 되었다. 수출자유지역을 필두로 한 경제특구정책은 외국인투자 유치, 수출증대 등의 가시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이루었으며 이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외국인투자유치 및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경제특구정책도 1998년에서 2004년까지 단기간 동안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및 종합보세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난립함에 따라 정책 효과가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경제특구의 설립목적이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조세 감

면 등 유사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혼란을 야기하며 외국의 경제특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2014.1월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자유무역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의 경우 0.7%(전체 수출 5,596억불, 자유무역지역 수출 38억불)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것도 2011년 51억불에서 25% 감소한 것으로 이는 종합보세구역의 112억불보다 낮은 수치” 라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일부에서는 막대한 국비가 투자될 뿐 만 아니라 국내기업과의 차별이 있는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폐지 또는 다른 경제특구와의 통합을 제기하기도 한다.<sup>1)</sup>

폐지론과 통합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및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경제 성장과 동시에 산업구조 전환에 지대한 공이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 이유는 여전하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및 성격을 적절히 변경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1970년에 제정되어 큰 틀의 변화 없이 시행되어 왔는데 1970년대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세계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변화에 기인한 글로벌 무역환경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글로벌 산업 환경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할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단 2번의 의미 있는 개정이 있었을 뿐이며 그동안의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중 첫 번째는 국제 분업화이다.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반제품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 후 완제품을 최종 조립하여 생산하는 국제 분업화가 국제 무역량 증가를 가져왔다. 1990년대 이전의 방식은 생산 공장을 현지에 설립하여 상품을 제조하고 그 시장 내에서 판매하던 방식이었으

---

1) 함길선,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2015), 3.

나 이후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본사에서 해외의 생산공장 및 공급업체간 SCM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후 서비스 공급업체 및 R&D센터까지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의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는 세계 경제의 이동이다. 과거 미국과 EU (유럽연합), 일본 등이 세계경제의 중심이었다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등 신흥시장을 거쳐 아시아 및 중동 등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반면 미국, EU 및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국내회귀 현상(Reshoring)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나날이 무역환경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세 번째는 무역장벽이다.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및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하여 세계시장은 점차 블록화 되어가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대테러방지 민관협력프로그램인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및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자유지역을 시작으로 약 50년간 프레임에 큰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고찰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제도의 정책적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올바른 방향성을 도출하고자한다. 특히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고찰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이해하고, 자유무역지역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지 발전 과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무역지역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절차를 분석하여 물류중심의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sup>2)</sup>의 현재 글로벌 무역환경에 알맞은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주된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현황 조사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혜택 및 운영실적을 분석하였고,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절차를 및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과정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후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문헌 연구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된 법령, 국내외 학자들의 저서 및 연구 논문, 무역기관의 각종 보고서와 간행물(신문기사 포함), 연구단체의 학술지, 그리고 관련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또한 사례 조사를 통하여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였고, 비즈니스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

2) 공항형 자유무역지역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대동소이한 형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통일하여 표현한다.

## 제 2 장 자유무역지역의 현황 및 화물관리절차

### 2.1 자유무역지역의 의의

자유무역지역(FTZ : Free Trade Zone)이라 함은 ‘한 국가 내의 일정 면적의 구획을 정하여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 위치하지만 외국의 영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으로 반출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통관 절차 등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화물의 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경제활동 특별구역<sup>3)</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외국 자본의 단순한 도입뿐 만 아니라 생산과 고용창출, 선진기술 이전과 경영기법의 습득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점차 여러 나라로 확산 및 발전하게 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675년 이탈리아의 도시 피렌체에서 자유무역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리보르노항에 관세 없이 상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였는데 이것이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효시가 되었다<sup>4)</sup>. 이후 미국에서는 1934년 뉴욕항에 외국무역지대를 설치하였고, 인도가 1965년 칸드라 지역에 수출가공지역, 대만이 1966년에 가오슝에 수출가공구, 중국은 1990년 상해에 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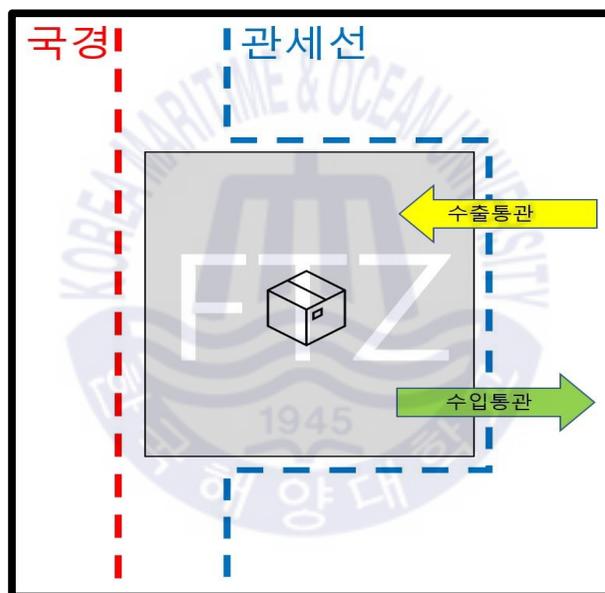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합포만의 기적’ 만든 우리의 첫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2020년 6월 9일 수정, 2020년 6월 10일 접속, <https://blog.naver.com/mocienews/221994734534>.

구라는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sup>5)</sup>.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개념은 경내관외(境內關外)정책에서 유래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한 국가의 국경 내에 위치하지만 관세선 밖에 위치하여 관세법상 외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곳을 말한다. 관세법상 관세선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는 보세구역<sup>6)</sup>도 해당하나 종합보세구역, 보세공장 및 보세건설장을 제외하고는 제조·가공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공장의 제조 범위를 넘어선 제조·가공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그림 2-1]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자유무역지역의 법률상 목적을 살펴보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sup>7)</sup>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크

5) 함길선, 전계서, 7.

6)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게 4가지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역개발이라는 공통된 목적과 무역의 진흥이라는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주목적 및 국제물류의 원활이라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주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조·물류·유통·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혜택은 크게 금전적 혜택과 절차적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전적 혜택으로는 저렴한 임대료의 적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임대료 및 조세 감면 및 기타 세제 혜택이 있으며 절차적 혜택으로는 보세상태로 제조·가공, 반입물품에 대한 보관기한 무제한 및 관련 기관의 업무 지원 등이 있다. 혜택의 부여는 곧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정투입에 대한 실효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현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유형에 따라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구분되며 2017년 6월말 기준 13개 지역에 261개 외국인 투자기업, 422개 국내 수출기업 등 총 68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sup>8)</sup>.

### 2.2.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리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서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마산, 군산, 대불, 울촌, 울산, 김제, 익산(지정 해제)으로 총 8개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7개가 지정·운영 중이며, 관리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설치되어 있다.

1970년 마산이 최초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에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개편에 따라 군산(2000년), 대불(2002년) 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동해와 울촌이, 2008년에는 울산과 김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및 추가되었다. 한편 익산의 경우 1973년에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2000년에 확대 개편 후에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되었다가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내수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동의를 거쳐 2010년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되었다.

[표 2-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2020년 3월 기준)

산업단지별 자유무역지역 지정일, 면적, 업체수, 입주율, 고용인원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울산	김제
지정일	'70.3(1공구) '72.12(2공구) '02.11(3공구)	'00.10.6	'02.11.21	'05.12.12	'05.12.12	'08.12.8	'09.1.6
면적 (천㎡)	957	1,256	1,157	248	344	819	991
입주업체 (개사)	117	32	34	16	18	36	30
외투기업 (개사)	(69)	(19)	(19)	(7)	(14)	(8)	(25)
입주율(%)	96.1	91.4	97.9	62.9	68.4	94.1	56.6
고용인원	5,408	1,657	893	165	224	1,313	38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2.2.2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으로 시작하였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2004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및 평택·당진항 5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고, 항만공사가 설치된 지역은 관할항만공사가 관리기관이며, 그렇지 않은 곳은 관할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기관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권자인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국내 유일하게 인천국제공항의 화물터미널과 배후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리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정되어 있다. 공항물류단지는 최초 물류중심의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2004년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과 통합됨에 따라 물류중심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표 2-2]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2020년 3월 기준)

항만·공항별 자유무역지역 지정일, 면적, 업체수, 입주율, 고용인원						
구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1.1	'02.1.1	'03.1.1	'08.12.8	'09.3.30	'05.4.6(1차) '07.12.31(2차)
면적(천㎡)	12,195	9,047	1,837	925	1,429	3,050
입주업체(개사)	67	50	1	3	15	689
외투업체(개사)	64	28	-	-	9	36
입주율(%)	76.8	92.9	100	79.0	100	91.2
고용인원	2,785	1,246	40	24	740	15,08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2.3 자유무역지역의 화물관리 절차

### 2.3.1 개요

자유무역지역(FTZ)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법에서 타법에 위

임을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sup>9)</sup>.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자유무역지역의 모든 사항에 대한 규정을 담기에는 부족하고 자유무역지역도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해당하므로 자유무역지역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규정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부분을 관세법에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관세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0)</sup>.

**[표 2-3] 관세법 준용규정**

관세법 준용규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반출)
제177조(장치기간)제1항제1호
제187조(보세공장의작업허가)제4항및제6항
제208조(매각대상및매각절차)
제209조(통고)
제210조(매각방법)
제211조(잔금처리)
제212조(국고귀속)
제213조(보세운송의신고)제2항부터제5항까지
제214조(보세운송의신고)
제215조(보세운송보고)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7조(보세운송기간경과시의징수)
제218조(보세운송의담보)
제219조(조난물품의운송)
제220조(간이보세운송)
제226조(허가.승인등의증명및확인)
제235조(지식재산권보호)제2항부터제7항

-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241조(수출·수입또는반송의신고)제2항  
 제242조(수출·수입·반송등의신고인)  
 제245조(신고시의제출서류)  
 제246조(물품의검사)  
 제247조(검사장소)제1항단서  
 제249조(신고사항의보완)  
 제250조(신고의취하및각하)제1항본문·제2항·제3항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적재등)  
 제278조(「형법」적용의일부배제)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저자 정리

특히, 관세청고시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물품의 반출입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고시 역시 대부분 관세법에 의한 절차를 규정한 관세청 고시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상세절차 대부분도 관세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 [표 2-4] 관세청 고시 및 훈령 준용 규정

관세청고시 및 훈령 준용 규정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처리에 관한 고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자료: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저자 정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관세법」과 차별화되는 핵심 규정 중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혜택에 관하여는 제10조(입주자격), 제19조(토지 또는 공장 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및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핵심 규정 중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으로는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가 규정된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국외반출신고”가 규정된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내국물품반입확인”이 규정된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이 규정된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기준), “영세율 등”이 규정된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등이 있다.

### 2.3.2 외국물품의 반입

해당 부두내 환적물품 및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제외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이 아닌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입물품도 동일하다<sup>11)</sup>.

반입신고는 하선절차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하고 House B/L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선장소로 지정된 입주기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컨테이너보관창고(CY)에서 반출·입

---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가.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화물
  - 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된 물품

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반입신고 하여야 한다.

외국물품 반입의 유형은 크게 보관 또는 전시물품의 반입, 선(기)용품 또는 수리용품의 반입, 사용소비 예정 물품의 반입 및 타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의 보세운송 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주업체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보관물품 및 사용소비 예정물품의 반입이 다수를 차지한다.

### 2.3.3 외국물품의 반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로는 그 목적에 따라 수입통관, 보세운송, 일시반출, 역외작업반출 및 폐기반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 및 보세운송 후 반출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후 원상태로 보관 중인 외국물품은 일반적인 일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와 동일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 2.3.4 내국물품의 반입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체가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창고관리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을 운용하여 자체적으로 재고관리하는 하는 경우에는 내국물품에 대한 반입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여야 하는 내국물품 반입관련 신고는 총 4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5] 내국물품 반입관련 신고

신고의 종류	용도	사용 서식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관세등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내국물품반입신고서(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 한고시 별지 제3-2호 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	관세등 면제 또는 환급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신청)서(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01호 서식)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확인	반입근거자료로 활용	내국물품반입확인(신청)서(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별지 제4호 서식)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승인	자유무역지역 제조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시 사용된 내국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를 위한 근거자료	내국물품의원재료사용승인(신청)서(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6호 서식)

자료: 관련 관세청 고시를 근거로 저자 정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소비하고자 반입하는 내국물품 및 비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일정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환급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같은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입신고<sup>12)</sup>를 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와 유사하나 대상과 용도가 상이한 “내국물품 반입확인” 절차가 있는바 이는 반입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및 “내국물품 반입확인”은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하 UNI-PASS)를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간편

- 12)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 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 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하게 신고가능하다.

### 2.3.5 내국물품의 반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 중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외반출신고를 통하여 해외로 반출이 가능하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한 국내로의 반출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통하여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내로 재반출은 불가하다.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한 물품을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량품에 해당하는 수량의 대체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면서 내국물품 반입확인<sup>13)</sup> 신청을 한 후 불량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하려는 자는 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2.4 자유무역지역의 혜택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의 진흥 및 국제물류의 원활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적 지역으로서 가장 핵심인 외국인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

1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2.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취소·각하되거나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3. 제32조에 따라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내국물품원재료 사용승인서
4.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필증. 다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반출신고한 물품은 제출 생략
5. 그 밖에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금전적 혜택으로는 저렴한 임대료의 제공 및 추가 감면,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의 혜택이 있으며, 절차적 혜택으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보류상태로 제조·가공,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자율성 부여 및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한 세액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 2.4.1 금전적 혜택

#### 1) 저렴한 임대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은 임대뿐 만 아니라 분양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대부분은 임대형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가 주변 지역에 비해 15% ~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점이다. 추가로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우 추가 감면까지 적용되므로 실제 임대료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 2년마다 임대료를 공고하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며 용도 및 층수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본 임대료에 추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감면비율이 75% ~ 100% 로서 매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표 2-6]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지역	재산별	m2당월임대가격	적용기간
마산	토지	452원 ~ 621원	2019.8.1. ~ 2021.7.31.
	건물	584원 ~ 2,740원	
군산	토지	96원	
	건물	497원 ~ 2,028원	
대불	토지	76원	
	건물	557원 ~ 1,242원	
동해	토지	61원	
	건물	355원 ~ 1,895원	

울촌	토지	103원
	건물	652원 ~ 3,479원
울산	토지	127원 ~ 318원
	건물	401원 ~ 2,350원
김제	토지	65원
	건물	439원 ~ 2,170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년 8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3년마다 임대료를 공고하고 있는데,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포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최근 2017년에 각각 공고하였다. 우대 임대료로서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129원,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321원으로 공고하였으며, 기존 입주기업의 경우 약 6년에 걸친 기간을 두어 이 임대료에 수렴하도록 하였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가 수치상 높은 편이지만, 공시지가 대비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면 광양항 자유무역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은 2009년에 개장하였으며, 기본 임대료는 700원, 우대 임대료는 500원 수준으로 2017년에도 이 임대료가 유지되었다.

**[표 2-7]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구분	적용대상		m <sup>2</sup> 당월임대 가격	적용 기간
부산 항	기본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에따른입주업종 을영위하는기업(우대임대료적용대상은제 외)	482원	2017. 07.30 ~ 2020. 07.29
	우대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제1항제5호에따 른물류업종을영위하는기업	321원	
광양 항	기본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에따른입주업종 을영위하는기업(우대임대료적용대상은제 외)	258원	2017. 07.30 ~ 2020. 07.29
	우대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제1항제5호에따 른물류업종을영위하는기업	129원	

포항항	임대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17원
평택·당진항	기본 임대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은 제외)	700원
	우대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500원
공통	공시지가 임대료	입주기업 중 당초 사업계획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 등	공시지가×50/1,000(국유재산법-연간)

자료 : 해양수산부 공고, 2017년 5월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고하는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토지임대료는 [우대화물 토지임대료 단가(원/㎡) × 우대화물 비율(%) + 일반화물 토지임대료 단가(원/㎡) × 일반화물 비율(%)] × 토지임차면적(㎡)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되며, 우대화물이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한 국제환적 화물을 의미한다. 토지임대료 단가는 2017년 7월 1단계 표준지 기준으로 일반화물 29,257원/㎡, 우대화물 14,618원/㎡으로 정하며, 화물비율은 무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타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되고 있다.

## 2) 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추가 우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하기 [표 2-8]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하는 토지 및 건물의 75% 또는 100%를 10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투자 금액에 따라 임대료 면제 인센티브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지역별로도 구분하였으나, 2013년 공고 때에는 일원화하였다.

[표 2-8]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

공통조건	개별조건	감면비율	적용기간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외국인투 자 기준 (감면시 점부터 10년간 적용)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년 8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에는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고 외국인투자 금액에 따른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어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하였다. 그러나 2013년 공고에서는 우대임대료 적용의 조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조건은 제외하고 물류기업일 경우로 완화하였고 [표 2-9]와 같은 임대료 감면을 적용한다.

[표 2-9]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

구분	조건	임대료	적용기간
임대료 감면적용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50%	각 기간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자료 : 해양수산부 공고, 2017년 5월

### 3) 기타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1,000만 불 이상, 물류업종은 500만불 이상일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자유무역지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한다.

취득세 및 재산세 등도 외국인투자금액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규정 중 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및 면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비교적 용이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 2.4.2 절차적 혜택

자유무역지역이 관세선 밖에 위치함으로써 관세가 유보된 상태로 제조가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가공의 범위를 넘어선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의 보수작업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추가로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수출에 같음하도록 하고 있다. 절차적 혜택을 부여한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절차로는 “사용소비신고”,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및 “국외반출신고”가 있다.

### 1) 사용소비신고

#### 가. 개요

사용소비신고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 가공, 조립, 보수 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의 전자문서 수입신고서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외국물품으로서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 상 관

리가 종결되어 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사용소비신고로 인하여 화물관리시스템 상 관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업체는 재고관리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재고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관장은 주기적으로 재고관리상황 조사를 할 수 있다.

#### 나. 사용소비신고의 작업 범위

사용소비신고의 작업범위는 기존 보세공장의 작업범위와 보세구역내 보수작업범위를 포함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국원재료를 과세보류상태로 제품생산에 중점을 둔 보세공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유무역지역은 국제물류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조의 범위에 못 미치는 화물의 단순 분할, 합병, 재포장 및 수리 등에 대하여도 사용소비신고가 가능하게끔 하여 더욱 자유로운 작업을 보장하고 있다.

[표 2-10] 사용신고, 보수작업 및 사용소비신고의 비교

	보세공장 사용신고	보세구역 보수작업	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
작업 범위	제조, 가공, 조립 등		제조, 가공, 조립, 분할, 합병, 재포장, 수리 등
		분할, 합병, 재포장, 수리 등	

자료: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저자 정리

#### 다. 사용소비신고 자격

사용소비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표 2-11]의 기준을 충족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하며 입주기업체가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사용소비신고를 할 수 없으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sup>14)</sup>.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참조

[표 2-11]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업종	기준
수출 주목적 제조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견기업 100분의 40, 중소기업 100분의 30)
수출 주목적 국내 복귀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견기업 100분의 40, 중소기업 100분의 30)
외국인투자기업 으로서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소유한 기업으로 수출비중이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견기업 100분의 40, 중소기업 100분의 30)
지식서비스산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견기업 100분의 40, 중소기업 100분의 30)
하역·운송·보관· 전시 등의 사업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복합물류 관련 사업, 선박 또는 항공기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연료, 식수, 선식 및 기내식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 선박관리업, 항만용역업, 교육·훈련업, 유통판매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정보처리업, 음식점업, 식품판매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및 미용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기관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저자 정리

입주업체는 관리부호(장치장소 부호)를 부여 받게 되며 「자유무역지역반출입에 관한 고시」 별표1에 그 부호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호를 통하여 입주기업체가 어떠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알 수 있다.

- 첫번째~세번째 자리 : 세관고유번호
  - 부여방법 : 통계부호표에 의함    예) 부산 030
- 네번째~다섯번째자리 :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
  - 제조업 : 41
  - 도매·수출입업 : 75
  - 하역·운송업 : 76
  - 보관업 : 77
  - 복합물류업, 도매·수출입업<sup>15)</sup> : 78
  - 기타(전시·수리·공급업 등) : 79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 80

#### 라. 사용소비신고 대상물품

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 대상물품은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 한 하기 물품에 한하며 특히 원재료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하기 물품을 제외한 외국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② 원재료, 유탄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 ③ 보관, 전시 등을 위하여 반입한 물품의 보수에 사용되는 물품
- ④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15)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입주기업체에 한함

실무상 외국원재료를 사용소비신고를 통하여 제조, 가공 및 조립에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에 한하는데 재고목록, 제품생산내역, 소요량계산서 및 원자재내역서(BOM: Bill Of Material)를 갖추고 입주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재고 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관업의 경우 포장 및 보수에 사용할 부재료에 대하여만 사용소비신고가 가능하며, 복합물류업의 경우 원상태로 반출 예정인 외국원재료, 단순 가공 또는 단순 조립을 거치는 외국원재료까지 사용 소비신고가 가능하다.

## 2)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 가. 개요

자유무역지역은 기본적으로 내국물품에 대한 반입신고 의무 및 반입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없으나 입주업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에 의해 신고하게 되는데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는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수출에 같음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제도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국내업체의 입장에서는 내국물품을 수출신고를 통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후 최종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는 필수적이다.

### 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대상물품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대상물품 중 사용소비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전술한 사용소비신고 대상물품과 동일하지만, 내국물품 중 국외반출을 최종 목적으로 반입되어 보관되는 물품의 경우 인적요건, 거래요건 등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에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가 가능하다<sup>16)</sup>.

- ①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 ②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 3) 국외반출신고

국외반출신고란 외국물품 등<sup>17)</sup>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법」의 반송신고와 동일한 성격의 신고를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에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외국물품을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을 거쳐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물품 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이 적용되므로 관세법 제 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서의 처리 및 선(기)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외국물품에 대하여 원상태로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세법이 적용되므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여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3호.

17)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6. “외국물품등“이란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을 말한다.)

## 제 3 장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현황 및 평가

### 3.1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용어를 규정 및 사용하게 된 것은 2000년부터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경제특구를 지정 및 운영하게 된 것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게 된 이후부터 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볼 수 있으며 이후 2002년 제정된 관세자유지역과의 통합을 거쳐 2004년에 현재의 자유무역지역의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개정 또는 개편의 이유가 된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자유무역지역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 자유무역지역의 연혁

#### 3.1.1 수출자유지역(Free Export Zone)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자본과 천연자원 및 산업기술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단지 풍부한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노동집약적 산업도 서서

히 세계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혔으며 노동력이 풍부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외국인 투자유치 및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수출을 진흥하고 고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0년 1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고, 경상남도 마산시(현재의 창원시 마산구)와 전라북도 이리시(현재의 익산시) 2곳에 수출자유지역을 지정·운영하였다<sup>18)</sup>.

수출자유지역 제도는 관세법상 보세창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원재료를 수입통관절차 없이 특정지역 내에 반입하고, 과세보류 상태에서 자유롭게 제조·가공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공업화 초기 단계에서 외국인투자자본과 저렴한 국내 노동력을 결합시켜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증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70년 1월 착공하여 전기, 전자, 정밀기기 업종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하였고, 2000년 7월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19년 9월 기준 한국소니전자(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기업의 외국단독 또는 합작회사 113개가 입주하여 운영되었다. 익산 수출자유지역은 1974년 12월 착공하여 귀금속, 섬유 업종 등의 회사들이 입주 및 운영되었고, 2000년 7월 익산자유무역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외국인투자유치의 어려움, 섬유업계의 불황 등의 사유로 2010년 12월 익산자유무역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2011년 1월 익산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었다.

### 3.1.2 관세자유지역(Customs Free Zone)

관세자유지역이란 국경 내 관세선 밖에 위치한 일정 구역으로서 통관절차의 간이, 관세 납부 유예 등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화물의 반출·입, 중계 및 가공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리적 경제특구이다.

관세자유지역제도는 국가 간 물류를 원활하게 하여 해당 지역을 국제 물류중

---

18)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입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sup>19)</sup>. 이 제도는 1999년 12월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2년 1월 부산항과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1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2004년 6월 자유무역지역제도에 통합될 때까지 시행된 제도이다.

관세자유지역은 당해 지역 내에서의 물품의 반출·입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관세 등 납부 유예 상태로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으며 국외반출신고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역이다. 국내에서 해당 지역으로 반입되는 내국 물품은 수출로 간주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등 관세법상 외국의 지위를 부여한 비관세지역이라 할 수 있다.

관세자유무역은 부산항과 광양항의 종합물류기능 향상과 하역·운송·전시·단순가공 등 물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관세자유지역은 지정 요건 충족이 어렵고, 운영에 있어 항만 본연의 업무 이상의 물류활동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당시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통합형 자유무역지역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은 통합하게 되었다.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여 통합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월 2일 제정되었고, 현재는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 3.1.3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1970년 제정 이후 제조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로운 제조와 무역활동 등

19)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항·항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하여 국가간의 물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역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보장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2000년 1월 자유무역 지역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이어 2004년 6월 관세자유지역까지 통합하게 되었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게 된 이유는 당시 정부에서 관세자유 지역에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 지역은 유사한 기능이 많으므로 이 지역들의 장점들을 통합한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는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으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고 유사 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유무역지역 특성에 따라 관할 지자체, 관할 공항공사 또는 항만공사로 전문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를 위임·위탁하였고 종전에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닌 업체도 입주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조업, 무역업, 하역업, 보관업, 복합물류업 등 여러 관련 업종이 입주 가능해졌다.

또한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원재료·기계·기구·설비 등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가능토록 하였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로서 국·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에 저렴한 임대료 적용 및 장기임대를 가능토록 하여 외국인투자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3.1.4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정책 방향 평가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의 관한 법률」은 가

장 의미 있는 개정 중 하나였으며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 제도와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하나의 자유무역지역 내에 제조업, 유통업, 무역업 및 물류업이 함께 입주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통합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제조업 및 물류업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하여 통합이 이루어졌다.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제조업 및 물류업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동일한 자유무역지역내 제조업종과 물류업종의 입주 비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 비율**

(2020년 5월 기준)

업종	항만형		산업단지형	
	업체 수	업체 비율	업체 수	업체 비율
제조업	17	5%	123	98%
도매수출입업	0	0%	1	1%
하역운송업	7	2%	0	0%
보관업	261	70%	1	1%
복합물류업	83	22%	0	0%
배송센터	4	1%	0	0%
합 계	372	100%	125	100%

자료: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2020년 5월 기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불과 5%에 지나지 않으며 95%는 물류업체이다. 반면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는 1%에 불과하며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체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현재도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물류 중심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물류업체의 입주 비율 및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제조업체의 입주 비율을 보았을 때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각 유형별 특성화에는 오히려 역행한 것으로 보인다.

## 3.2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실적 평가

### 3.2.1 외국인투자유치 측면

자유무역지역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첫 번째 목적은 외국인투자 유치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산업단지 등에 비해 외국인 투자를 얼마나 유치하였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계자료의 집계기준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을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신고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도착금액누계-회수금액누계’인 잔액(FDI Stock)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금액을 집계하고 있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운영된 기간이 오래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2000년대 중반에 운영을 시작한 관계로 아직까지 성공사례라고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1970년에 지정되어 오래도록 운영되고 있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에는 2017년 기준 10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중 62개 기업이 외국인투자 기업이다. 또한 전체 투자액 2.4억 달러 중 1.7억 달러가 외국인투자자로 68.6%에 달하고 있다.

노키아TMC는 2000년대 중반에는 상시고용가능 인구 2,000명에 달하며,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 중 8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한때 전 세계 노키아 사업장 중 생산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생산기술 및 근면성 등 노동력을 활용한 사례로 활용되었으나, 2014년에는 노키아 본사의 경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철수하였다<sup>20)</sup>.

경제특구별 외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약 10년간 3개 경제특구인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기

20) 이성우, 송주미, 한덕훈, 전게서, 23.

업(749社)과 외국인투자금액(203억 3,181만불)은 한국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수 및 외국인투자금액의 각각 6.9%, 21.2%로서 기업수 대비 투자금액이 높은 편으로 경제특구 지정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자유치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비율이 0.7%, 외국인투자기업 비율이 2%로 외국인투자지역(15.1%, 3.0%) 및 경제자유구역(5.4%,1.9%)에 비하여 외자유치 실적이 가장 떨어진다.

[표 3-2] 경제특구별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업 현황

구분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기업	
		금액(백만\$)	비율(%)	업체수	비율(%)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5,152.3	5.4%	206.0	1.9%
	자유무역지역	674.7	0.7%	213.0	2.0%
	외국인투자지역	14,491.1	15.1%	330.0	3.0%
	합계	20,318.1	21.2%	749.0	6.9%
한국전체		95,704.3	100.0%	10,914.0	100.0%

자료: 경제자유구역청, 해양수산부, 각 항만 및 공항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 3.2.2 무역의 진흥 측면

자유무역지역의 조성 목적 중 하나인 무역의 진흥은 제조업이 중심이 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주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산업자원통상부 및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수출실적, 수입실적, 무역수지, 입주업체 및 고용인원 등 주요 통계를 주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2009년에서 2018년까지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마산, 대불 및 동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타 자유무역지역보다 수출규모가 큰 마산자유무역지역은 2008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여 10년간 약 74%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울춘, 울산 및 군산 자유무역지역은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김제 자유무역지역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수출실적

[단위:천\$]

연도	마산	대불	울촌	김제	울산	군산	동해
2009	3,850,454	427,568				58,515	
2010	3,774,318	370,626	879			136,023	
2011	3,241,501	456,812	3,475			240,614	
2012	2,308,480	408,276	10,466			401,010	
2013	1,527,815	352,105	28,400			391,818	
2014	1,130,949	707,687	40,319	11,590	24,324	463,417	
2015	1,091,131	569,940	29,450	10,928	57,702	351,055	
2016	1,153,439	286,758	13,314	67,592	135,934	342,662	
2017	1,173,516	392,830	61,456	13,050	211,978	420,297	23,415
2018	986,336	85,049	61,880	12,222	191,817	453,214	2,25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공식적으로 별도의 수출실적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내국물품 및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실적까지 포함하므로 수출실적을 비교 검토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관세청 무역통계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수출통계 상 수출금액으로 수출 실적의 흐름 및 추세는 가늠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한 자유무역지역 전체의 수출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4]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실적

[단위:천\$]

연도	건수	금액
2009	89,117	4,898,317
2010	108,633	5,837,316
2011	101,617	5,081,260
2012	75,490	4,337,011
2013	44,374	3,752,786

2014	30,976	1,952,099
2015	33,557	2,965,118
2016	42,155	4,157,158
2017	64,465	10,572,954
2018	80,247	18,440,139

자료: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상기 [표 3-3]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과 [표 3-4]의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실적을 그래프로 비교해보면 수출실적의 증가 또는 하락 추세를 [그림 3-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전체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은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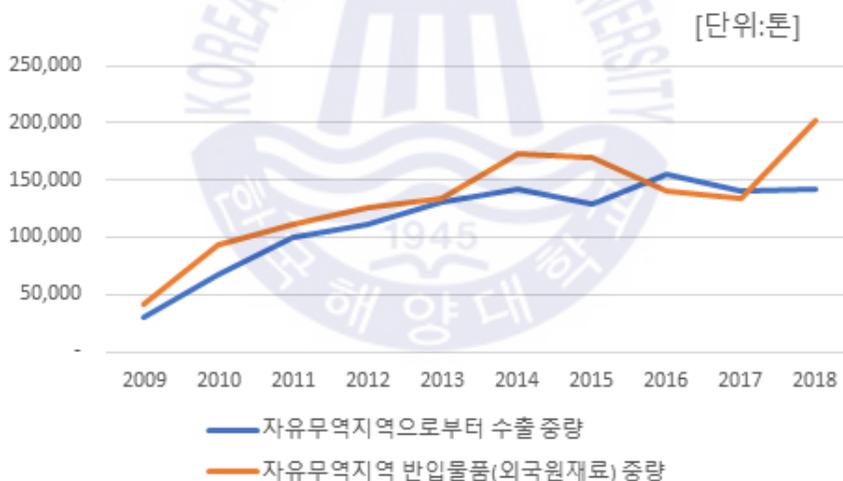
[그림 3-2] 자유무역지역 수출금액 실적 비교

무역의 진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척도인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성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항만형 자유

무역지역은 최근 글로벌배송센터의 유치 및 아시아 물류거점으로 활용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2.3 국제물류의 원활 측면

자유무역지역이 원활한 국제물류에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류업 중심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항만배후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컨테이너 터미널 및 인근 지역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지정·운영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관업 및 복합물류업종의 기업들이다.



[그림 3-3] 자유무역지역 물동량 추이

터미널 및 항만배후부지의 물동량 통계는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업무뿐만 아니라 하역 및 보관 등 기본적인 항만 본연의 업무까지 포함하는 수치이므로 해당 통계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동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수출 중량 및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물동량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관세청 통계자료를 근거로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수출된 중량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원재료의 중량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면 물동량의 변화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수출중량과 반입된 외국원재료의 중량은 유사한 형태로 함께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 물동량이 증가 추세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이 국제물류의 원활에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4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방향

자유무역지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 역시 제조업 중심의 대형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실적은 3대 경제특구 중 가장 떨어지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에 치우치지 않고 발전의 중심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점차 이동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3.3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관련 연구는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및 개편되기 전까지는 수출자유지역이라는 명칭으로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마산, 광양항 등 개별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 지역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부가가치 창출방안,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방안 등이 주요 연구였으며 최근 경제자유구역 또는 외국인투자지역과의 비교 및 활성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한상현·김태인(2007)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국제 비거주자재고관리(VMI; Vendor Managed Inventory)를 적극 도입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동아시아권의 물류Hub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비거주자의 명의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가칭 “세관사무관리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의 다양한 법령의 개정 및 자유무역지역 운영과 화물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장근호(2012)는 미국 자유무역지역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화물관리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주기적 정책효과 검토 및 제도 보완 절차를 마련하고, 반출입 물품, 제조공정 및 입주업체 등에 대한 관리권자의 사후관리 강화하며, 통제시설 등 기본 여건 및 재고장부시스템 등에 대한 세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성우·송주미·한덕훈(2014)은 외국인 투자유치 패턴에 적합한 투자 유인 결정 요인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결합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을 선도형 자유무역지역(1종)과 특화형 자유무역지역(2종)으로 구분하여 특성화 방향 및 인센티브 지원 방향을 이원화하고자 법제도를 제안하며, 해당 기능 재정립 방안에 의거하여 신규 제도도입 부분, 기존 제도에 대한 개정 부분 등을 제안하였다.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인센티브 강화, 관리·운영관련 제도개선, 사업 환경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이며 신규 제도로는 클러스터 구축지원관련 사항,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이 해당한다.

함길선(2015)은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현황과 유사제도를 비교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국가의 자유무역지역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사전적 세제지원 정책 도입, 유사제도와 통합운영 등의 정책적 측면과 총괄 전담기관의 설치와 같은 관리·운영적 측면 및 장치기간 제한 폐지, 자유무역지역 내 생산물품에 대한 FTA협정 적용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한옥순(2018)은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인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상 국내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간주 여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사용소비신고 등 통관제도의 개선에 따른 성공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글로벌배송센터 유치로 물류기업의 매출증대, IT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산업 생산유발, 고용증대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계기가 됨을 시사하였다.

[표 3-5]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및 연구명	주요 연구내용
<p>•한상현·김태인 (2007), 국제VMI 활성화를 위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VMI(Vendor Managed Inventory)를 도입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재고 및 동아시아권의 물류Hub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li> <li>• 비거주자의 명의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가칭 “세관사무관리인” 제도의 도입</li> <li>•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의 다양한 법령의 개정 및 자유무역지역 운영과 화물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li> </ul>
<p>•장근호(2012),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화물관리절차를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자유무역지역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화물관리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li> <li>•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체제,주기적 정책효과 검토 및 제도 보완 절차를 마련</li> <li>• 입주업체 등에 대한 관리권자의 사후관리 강화</li> <li>• 통제시설 및 재고장부시스템 등에 대한 세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li> </ul>
<p>•이성우·송주미·한덕훈 (2014), 외국인 투자 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유치 패턴에 적합한 투자 유인 결정 요인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결합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li> <li>• 선도형 자유무역지역(1종)과 특화형 자유무역지역(2종)으로 구분하여 특성화 방향 및 인센티브 지원 방향을 이원화 하는 법제도를 제안</li> <li>• 인센티브 강화, 관리·운영관련 제도개선, 사업환경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관련 제도개선</li> <li>• 클러스터 구축지원관련 사항,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 제시</li> </ul>
<p>•함길선(2015),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현황과 유사제도를 비교</li> <li>• 동북아지역 국가의 자유무역지역 제도 등을 비교 분석</li> <li>• 사전적 세제지원 정책 도입, 유사제도의 통합·운영, 총괄</li> </ul>

방안 연구	전담기관의 설치 등 • 장치기간 제한 폐지, 자유무역지역내 생산물품에 대한 FTA 협정 적용 등 개선안 제시
•한옥순(2018),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내 글로벌배송센터 유치 글로벌배송센터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 연구	•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내 외국법인의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상 국내고정사업장 간주 여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사용소비신고 등 통관제도의 개선에 따른 성공 사례 분석 • 제도 개선을 통한 글로벌배송센터 유치로 물류기업의 매출 증대, IT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산업 생산유발, 고용 증대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계기가 됨을 시사

기존 연구들은 해외 자유무역지역 제도와 비교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강화 또는 유사제도와 통합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현황과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법령 상 화물관리절차의 근소한 개선을 통하여도 충분히 동북아시아 물류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타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장에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자유무역지역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 제 4 장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최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 및 물동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제 물류의 거점 및 무역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8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전자상거래 글로벌배송센터의 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 등 의미 있는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어떠한 절차와 기능을 이용하여 업무가 수행되는지 확인해보고,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또는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있는지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 4.1 수입물품 가공 후 국내외반출 Model

#### 4.1.1 비즈니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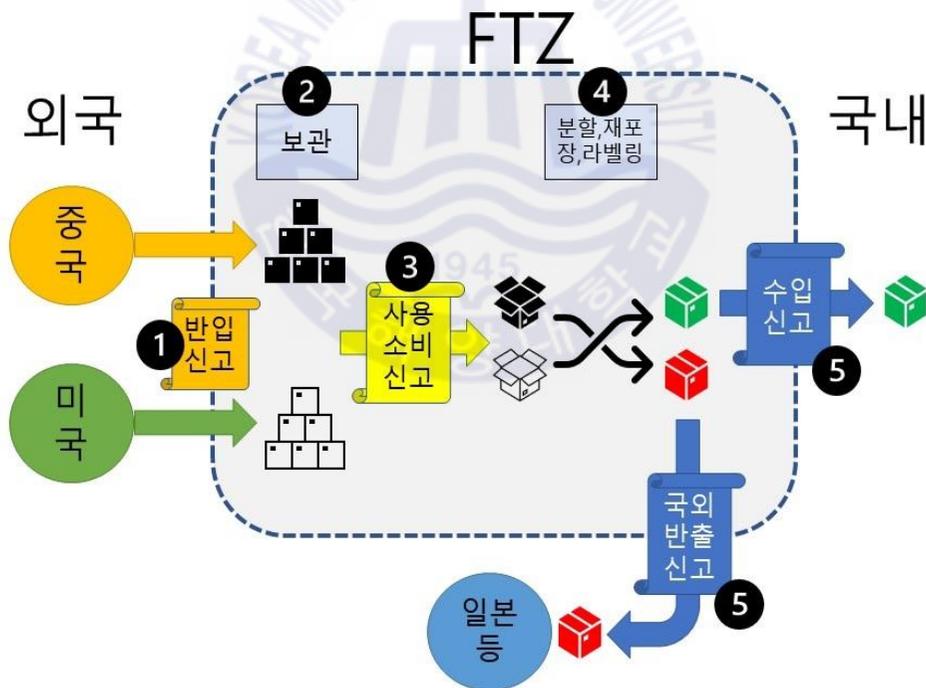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로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의 작업을 거친 후 국내외로 반출하는 형태이다. 기존 보세창고에서는 보수작업승인에 의한 단순 분할, 재포장 및 원산지표시 등 보수작업만 가능하였다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사용소비신고를 통하여 분할, 합병, 재포장, 라벨링, 보존, 수리 및 단순조립 등의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은 미국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다단계 마케팅 회사인 A사를 비롯하여 홈쇼핑 회사인 일본의 S사 등 여러 기업들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복합물류창고를 이용하여 국제집배송센터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상기와 같은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되면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 상 관리가 종결되고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낱개 단위로 자율재고관리가 가능하며, 사용소비신고 대상물품의 범위를 단순 조립 등의 물리적 작업뿐만 아니라 B/L의 분할과 합병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 4.1.2 업무절차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주로 외국물품을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반송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며, 부자재로서 내국물품을 사용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Set 상품화 하여 단일포장으로 재포장하기도 한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한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 4-1] 수입물품 가공 후 국내외반출 Model의 도해

- ① 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외국물품을 복합물류창고에 입고하고 관세청

UNI-PASS를 이용하여 반입신고를 전송한다.

- ② 보세상태로 보관을 하며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서 관리 된다.
- ③ UNI-PASS를 이용하여 “사용소비신고” 전송 후 세관의 심사를 거쳐 수리되면,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서 “반출” 로 처리되어 관리가 종결된다. 이후부터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날개 단위로 자율관리하게 된다.
- ④ 팔레트 또는 박스 단위의 화물을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을 거쳐 출하단위에 맞게 작업한다.
- ⑤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의 수요처로 양도하여 반출하거나, “국외반출신고” 를 거쳐 해외 수요처로 선적하기 위하여 반출한다. 반출이 완료되면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출고처리 한다.

#### 4.1.3 비즈니스 모델의 장단점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복합물류업체를 국제물류허브로 사용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모델이다. 사용소비신고를 통하여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서 관리가 종결된 후에는 B/L 분할 신청 및 보수작업 신청 절차 없이 자유롭게 분할, 재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가능하다. 다만, HS Code의 변경이 수반되는 단순 조립 이상의 작업은 복합물류업체에서 수행이 불가하므로 HS Code가 변경될 정도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통하여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금지되므로 반입신고 한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외반출 후 재수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운송시간과 물류비용이 추가되며 복합물류업체 입장에서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재고관리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 4.2 수입물품 분할·합병 후 보세운송 Model

### 4.2.1 비즈니스 개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형태로서 조선기자재의 유지·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물류업체 B사 등이 이용 중인 모델이다.

조선기자재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피와 중량이 거대한 물품이 많고 동일 B/L 내에 Set를 구성하는 물품이 많으므로 보세공장인 조선소에 B/L분할을 통한 분할 입고 시 입고물품에 대한 가격을 함께 분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조선소에서 공정투입 전에 보세공장 사용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일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보세운송신고 및 사용신고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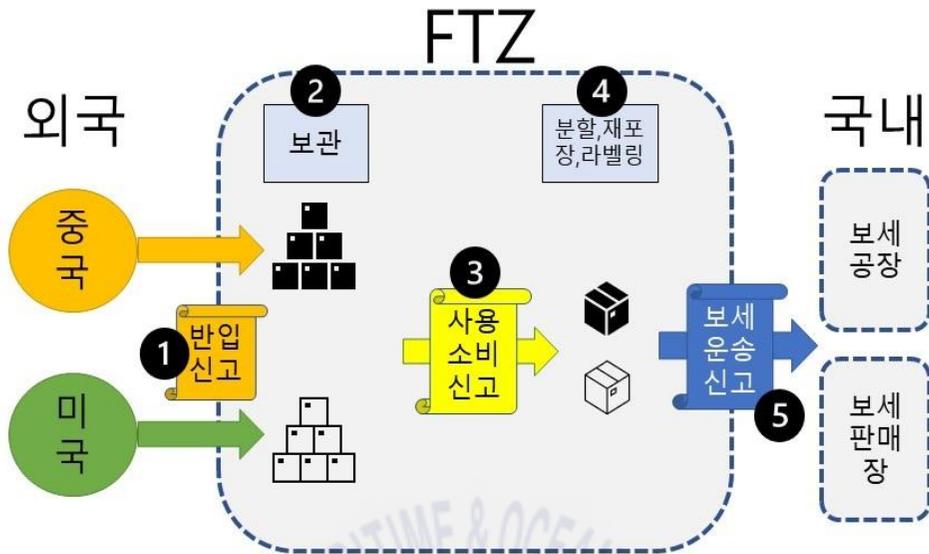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화물에 대한 물리적인 제조가공이 없는 단순 B/L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사용소비신고대상에 포함하므로 사용소비신고 후 분할·합병, 보세운송 및 반입신고(사용신고 같음)<sup>21)</sup>의 절차를 이용하면 업무의 편의성 향상 및 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다. 해당 모델을 활용하면 보세판매점인 면세점에 외국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B/L분할을 여러 차례 신고해야 하는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취급업체인 국내 N사 등이 해당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 4.2.2 업무절차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한 업무절차는 [그림 4-2]와 같다.

---

21)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물품 반입 확인서” 발급 대상물품은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을, 다른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된 물품과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내국물품은 사용신고 생략한다.



[그림 4-2] 수입물품 분할·합병 후 보세운송 Model의 도해

- ① 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외국물품을 복합물류창고에 입고하고 관세청 UNI-PASS를 이용하여 반입신고를 전송한다.
- ② 보세상태로 보관을 하며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된다.
- ③ UNI-PASS를 이용하여 “사용소비신고” 전송 후 세관의 심사를 거쳐 수리되면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서 “반출”로 처리되며 관리가 종결된다. 이후부터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날개 단위로 자율관리하게 된다.
- ④ 화물을 보세공장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요청하는 수량에 맞게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을 거쳐 출하단위에 맞게 작업한다.
- ⑤ 보세운송신고 후 반출이 완료되면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출고처리 한다. 화물이 보세공장 또는 보세판매장에 도착하면 반입신고를 한다.

#### 4.2.3 해당 모델의 장단점

보세공장인 조선소의 경우 선박 건조 시 부피와 중량이 거대한 원자재가 투입되므로 적기에 원자재가 입고되어 공정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입원자재의 경우 외부 보세창고를 별도로 이용하여 보관하고 보관 중인 원자재에 대하여 B/L분할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거쳐 조선소로 입고하게 되며 조선소는 조립에 전용한다. B/L 분할 시 많게는 수십 번의 분할신고를 거치는데 건건이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분할되는 물품의 가격을 나누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해당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B/L 당 1회의 사용소비신고로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 상 관리가 종결되므로 이후에는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B/L 분할을 할 수 있다. 추가로 미리 관할 세관에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 생성 없이 간이하게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조선소에 반입신고 시 사용신고에 갈음하도록 규정하여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 없도록 하였다.

수입물품을 분할 및 재포장 등을 거쳐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사용소비신고를 통하여 분할 신청 및 보수작업 신청 절차가 필요 없게 되며 날개 단위 재고관리를 통하여 자유로운 재고관리가 가능하므로 일반 보세창고 보관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 4.3 전자상거래 글로벌배송센터 Model

#### 4.3.1 비즈니스 개요

최근 Global E-Commerce의 발달로 인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및 그에 따른 배송물류가 국제 물동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1위), 일본(4위) 및 한국(5위)은 국가가 서로 연결된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관세청 및 물류기업들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I사의 아시아 배송센터를 인천공항에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미국에서 일본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배송시간이 5일에서 7일 소요되었다면 인천공항에 글로벌배송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sup>22)</sup>를 설치한 이후에는 배송시간이 2일로 단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현재 인천항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에 입주한 글로벌배송센터는 총 4개 업체이며 전자상거래 업체 1사의 배송센터 유치로 인하여 아마존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업무 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 4.3.2 업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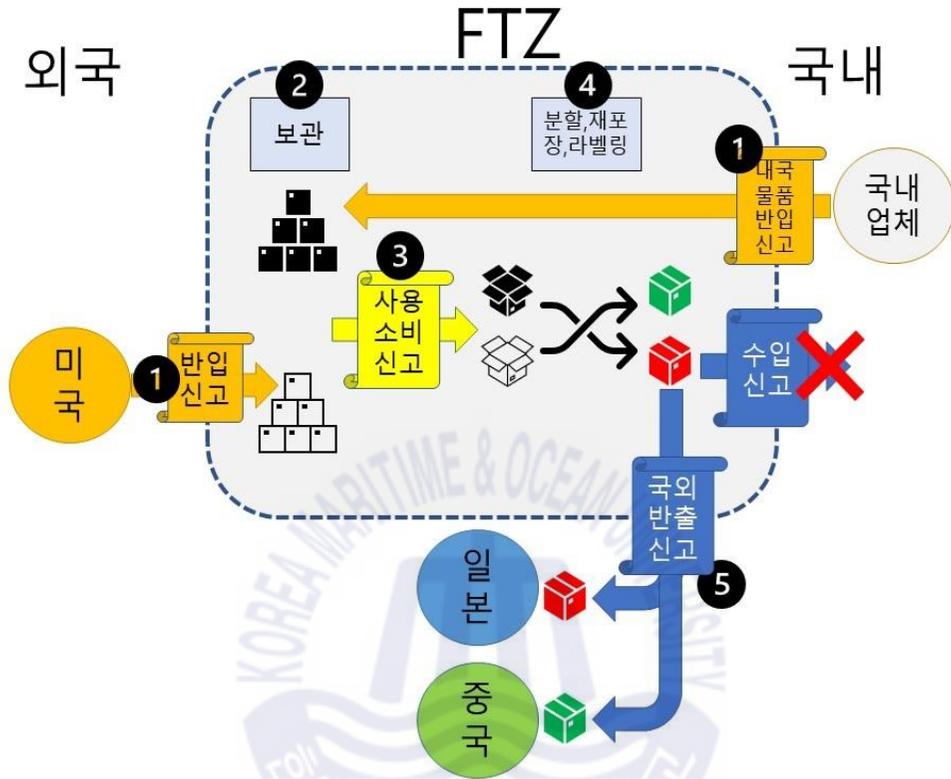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전자상거래물품의 글로벌배송센터 역할로서 주로 해외에 소재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국외 반출하는 모델이며 업무절차는 [그림 4-3]과 같다.

- ① 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외국물품을 글로벌배송센터에 입고하고 관세청 UNI-PASS를 이용하여 “품목단위 반입신고”를 전송한다. 국외반출대상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전송한 후 반입한다.
- ② 보세상태로 보관을 하며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된다.
- ③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UNI-PASS를 이용하여 “사용소비신고” 전송 후 세관의 심사를 거쳐 수리되면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서 “반출”로 처리되며 관리가 종결된다. 이후부터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날개 단위로 자율관리하게 된다.
- ④ 팔레트 또는 박스 단위의 화물을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을 거쳐 출하단위에 맞게 작업한다. 일반적으로 배송센터에서 해외에서 내륙운송

22)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란 세관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를 유치하여 해외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 분류·보관·재포장 및 국제배송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에 이용되는 택배용 송장을 미리 부착한다.



[그림 4-3] 전자상거래 글로벌배송센터 Model의 도해

- ⑤ “국외반출신고” 를 거쳐 해외 수요처로 선적하기 위하여 반출한다. 국외로 반출이 완료되면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출고처리 한다.

### 4.3.3 해당 모델의 장단점

전자상거래 글로벌배송센터 비즈니스 모델은 자유무역지역에 대량화물을 수입하여 반입하여 재고로서 보관하고, 사용소비신고를 통하여 보세상태로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주변국에 소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에게 직배송이 가능하도록 고안한 B2C 모델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외국물품뿐만 아니라 내국물품도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통하여 반입 후 국외반출도 가능하며,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를 통하여 반입과 반출을 간

이하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소비신고 한 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불가하므로 글로벌배송센터가 소재한 국가의 소비자에게 배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한 물품에 대하여도 수입통관이 불가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4.4 비거주자 재고관리 Model

### 4.4.1 비즈니스 개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S.C.M의 발달로 지역별 생산거점을 가지고 O.E.M 형태로 생산하거나 중계무역의 형태로 생산을 해외에 일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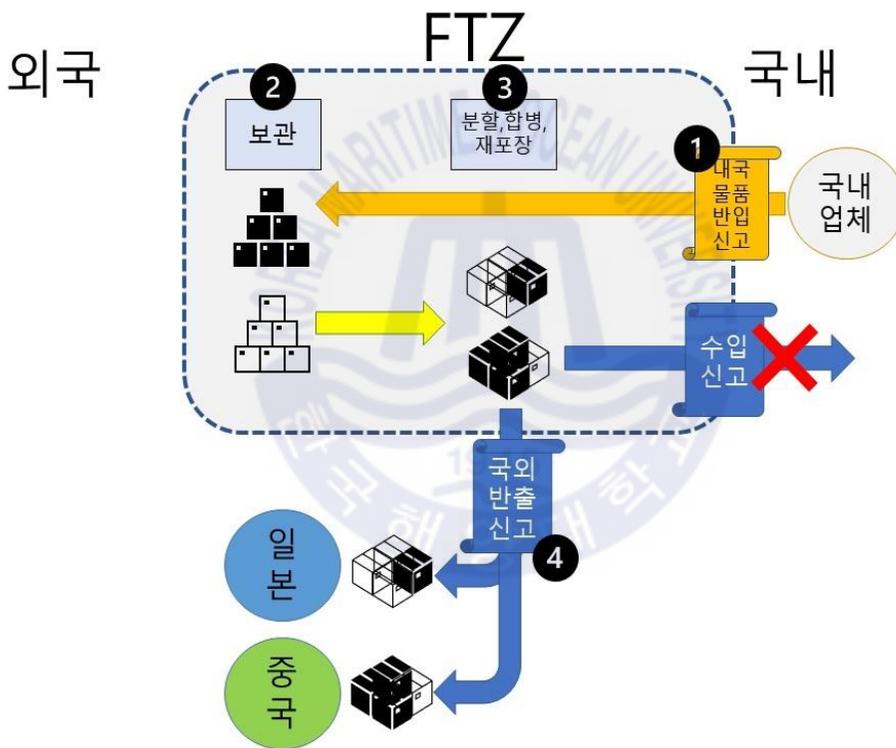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국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판매기업이 자국으로 전량 수입하여 보관하다가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생산자가 제3국의 구매자에게 직접 선적하도록 하고 판매기업은 B/L Switch 등의 방법으로 제3국 구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전자의 경우 물류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누설로 인한 Risk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수출국의 자유무역지역을 배송 거점으로 이용한 비거주자재고관리 모델이 이용되고 있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일본계 글로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델로서 반도체 자재 제조기업인 D사, 첨단소재 제조기업인 T사 및 화학제품 제조기업인 M사 등 여러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 4.4.2 업무절차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비거주자가 소유권을 가진 화물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재고관리를 할 수 있는 국제물류거점의 역할로서 주로 내국물품을 수출하는 모델이며 업무절차는 [그림 4-4]와 같다.

- ①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대량으로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내 복합물류업체에 반입하고 관세청 UNI-PASS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전송한다.
- ② 비거주자가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보관을 하며 복합물류업체는 비거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자체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③ 비거주자에 요청에 따라 필요시에 팔레트 또는 박스 단위의 화물을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 출하단위에 맞게 부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림 4-4] 비거주자 재고관리 Model의 도해

- ④ 제3국 구매자의 출하 요청에 따라 입주업체 명의로 “국외반출신고”를 거쳐 선적하기 위하여 반출한다. 국외로 반출이 완료되면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출고처리 한다.

### 4.4.3 해당 모델의 장단점

국내 생산자는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제품을 반입하는 것만으로 직접 수출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관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시 생산자에서 판매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물품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자금 회전율이 좋아진다.

판매기업은 생산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자신의 소유권 아래 원격지에서 자유로운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판매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 보관 중인 재고에서 분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함에 따라 물류비 절감과 영업비밀 보안을 동시에 이룰 수 있으며, 생산국에서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타 생산국의 제품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후 통합하여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이 금지되어 있어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불가하다. 따라서 판매기업이 생산국 내에 소재하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자국으로 수입한 후 재수출하고 구매자가 수입하는 물류형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 제 5 장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5.1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 배경

#### 5.1.1 제도 개선의 필요성

아시아 경제의 비중은 세계 경제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한·중·일 삼국이 주축이 된 동북아는 생산기지에 그치지 않고 거대 소비지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발효, 한·중·일 3국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을 FTA의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바 가까운 미래에 동아시아 거대경제권 블록이 형성될 것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거대 경제권의 중앙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은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최근 카페리를 이용한 한·일간 자동차부품 조달에 밀크런 물류방식<sup>23)</sup>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에 따라 국제적 Seamless 운송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더블넘버새시<sup>24)</sup>라는 큰 결과물을 냈으며, 향후 트리플넘버새시까지 가능해진다면 한·중·일 3국간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이동 및 국경 없는 교역이 기대 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자유무역지역은 동아시아 물류의 거점으로 수출 위주의 일방향 정책을 지양하고 수출입 모두 원활한 양방향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수출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수출 증대에 적합하도록 절차 및 혜택이 설계되어 있어 내수 위주의 기업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 것이 사

23) 밀크런(Milk-Run, 공장순회수집 및 일관운송) 물류: 우유회사가 목장을 순서대로 돌면서 원유를 수집한 데서 유래된 물류방식

24) 더블넘버새시(Double Number Chassis): 트랙터와 새시가 분리되는 윈바디 형태의 화물차량으로 한국의 자동차 번호판과 일본의 자동차 번호판이 동시에 부착되어 양국의 도로교통법을 모두 충족시켜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는 화물차량

실이다. 2010년에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이 의견을 모아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제시킨 것은 내수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저렴한 임대료 및 세제혜택 등이 수출기업 위주로 지원된다는 것은 내수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

2000년대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여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정책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그 효과가 미미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중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물류업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시너지 효과보다는 특성화 전략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5.1.2 제도 개선 방향성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의 경우 수출 위주의 자유무역지역 제도 하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관세법상 보세구역과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단순히 하역, 보관 등 보세구역의 역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역개발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국제물류 원활화에 특화된 기능을 하도록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2004년에 기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자유지역과 물류업을 중심으로 한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여 현재의 자유무역지역제도가 태동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바 외자유치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진 제도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글로벌 무역환경 및 물류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기 보다는 특화된 기능을 가지는 것이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나누어 운영 및 관

리하여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만, 현재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과거와 같이 2개의 법률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며 현재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에 위임을 함으로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별도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5.2 내국물품의 관세영역 재반출 제도 개선 배경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 제4장의 4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지만, 4가지 모델 중 하나에서 축약하거나 파생된 모델이 대부분이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직접 제조를 수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되는 절차로서 사용소비신고,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및 국외반출신고가 주로 이용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확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고절차의 도입 및 기존 신고절차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비즈니스 모델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는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이 국내에 위치하나 관세영역과 구별하여 세제 및 제도상의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및 국제물류유치를 유도하면서도 자유무역지역 설립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내국물품 반출을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목적과 무관한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sup>25)</sup>.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내국물품의 반출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및 세제 혜택 등을 받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복합물류기업들이 내국물품을 주로 보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자유무역지역 설립취지와 상반되나, 비거주자가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한 물품에 대한 관세영역 재반출은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위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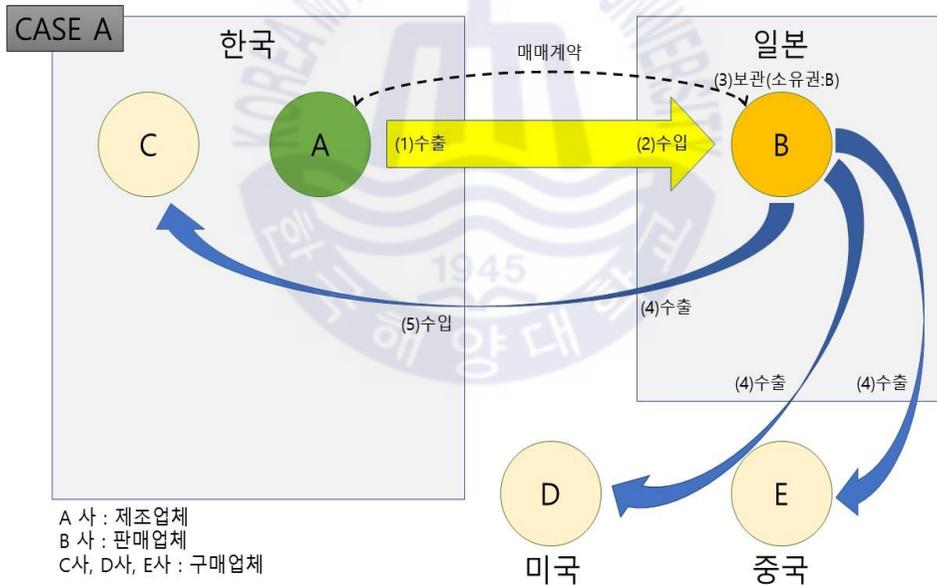
---

25) 함길선, 전계서, 27.

국제물류거점 및 글로벌배송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물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비거주자가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이유는 충분하다.

### 5.3 제도 개선에 대한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 비거주자 재고관리 모델을 대표적 예시로 하여 비거주자가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재반출 가능하도록 개선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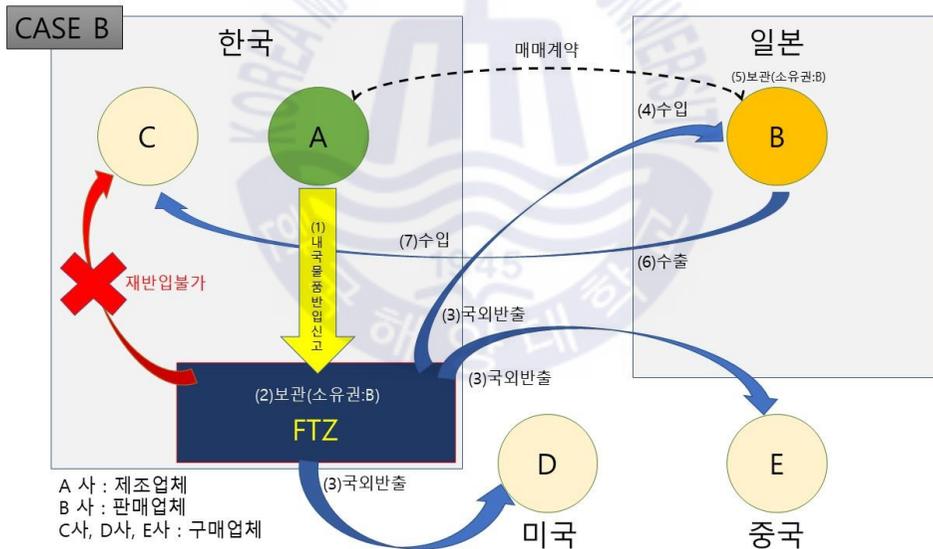


[그림 5-1] 일반 수출 형태

[그림 5-1] “CASE A”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전통적으로 이용되는 물류형태이다. 일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B사는 한국의 제조업체 A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수입하여 일본 소재 창고에 보관하며 한국,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 (1) 한국의 A사는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수출통관을 거쳐 일본의 B사로 수출한다.
- (2) 일본의 B사는 수입통관을 거쳐 창고에 보관하거나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보세창고에 자사 재고로서 보관한다.
- (3) 한국, 미국 및 중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수출 또는 반송통관을 거쳐 각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일본의 B사는 중계무역의 형태로 한국으로부터 D사와 E사로 직접 수출하거나 한국의 A사에서 C사로 직접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제조업체 정보가 구매업체에게 노출되는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물류형태를 이용하게 된다.



[그림 5-2] 현행 비거주자재고관리

[그림 5-2] “CASE B”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거점으로 이용하여 B사가 A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하고 반입한 후 자유무역지역에 B사가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보관을 하고 D사와 E사로부터 주문이 있을 시 국외반출신고 및 선적하는 형태이다. 다만, C사로부터 주

문이 있는 경우 일본으로 수입하였다가 다시 재수출하고 C사는 수입통관을 거쳐 구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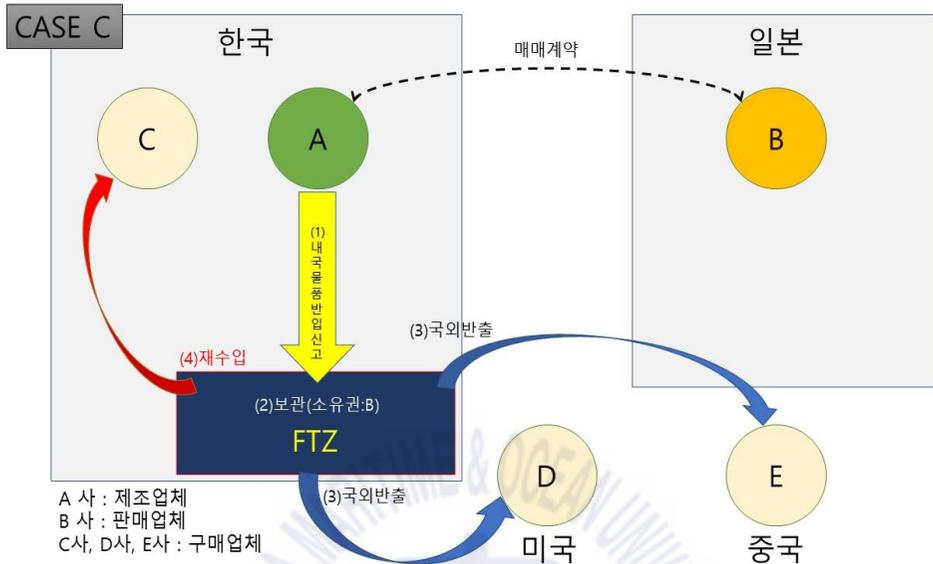
- (1) 한국의 A사는 판매한 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일본의 B사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인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2) 한국의 A사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제품을 인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 (3)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B사의 대리인으로 제품을 보관하며 B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D사와 중국의 B사로 국외반출신고를 거쳐 선적한다.
- (4) 일본의 B사는 한국에 소재한 C사로부터 주문을 받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보관 중인 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한 후 다시 한국의 C사로 수출한다.

현행 자유무역지역제도에서는 한국에 소재한 구매업체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일본을 거쳐서 판매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별도의 재고관리가 수반된다. 이러한 물류형태의 경우 완전한 비거주자재고관리 형태로 볼 수 없으며 수출입 양방향의 모두 자유로워야 할 국제물류허브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수출입 양방향의 자유로운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영역으로 재반입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림 5-3]과 같은 비거주자재고관리가 가능하다.

- (1) 한국의 A사는 판매한 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일본의 B사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인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2) 한국의 A사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제품을 인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 (3)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B사의 대리인으로 제품을 보관하며 B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D사와 중국의 B사로 국외반출신고를 거쳐 선적한다.
- (4) 한국에 소재한 C사로부터 주문을 받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한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C사가 직접 수입통관 및 운송 할

수 있다.



[그림 5-3] 개선 후 비거주자재고관리

상기와 같은 비즈니스모델은 이미 중국에서 보세물류원구를 이용하여 비거주자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모델이다. 보세물류원구의 경우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물류거점으로 이용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있다.

#### 5.4 법률 개정의 제안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 하기위한 개선점을 살펴본 결과 우선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보관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영역으로 재반출 부분이다. 이를 중점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수적 개선안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및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FTA원산지증명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추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5.4.1 내국물품의 관세영역 재반출 개선

### 1) 현황 및 문제점

자유무역지역제도의 특성상 외화획득 및 수출의 장려에 중점을 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통하여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영역 재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로 인하여 외국물품은 국내외 양방향으로 반출 가능하나, 내국물품은 국외로 일방향 반출만 허용되므로 복합물류업체 입장에서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반출입 관리를 별도로 이원화 할 수밖에 없다.

양방향 반출입 및 재고관리의 일원화가 어려운 현 제도는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또는 글로벌배송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큰 제약이 되므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후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에 관한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2017년 9월 22일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sup>26)</sup>에 따르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한 국내 재반출을 허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으로 인하여 법령 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 2) 제안 내용

과세형평 및 통관질서문란 등의 개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제물류허브 또는 글로벌배송센터의 유치를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여전히 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존 개정안에 면세사업자의 통관 제한 및 면세 적용 제한을 추가

2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62호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을 제안한다.

과세형평을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세 형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재수출 면세, 재수출 감면세, 재수입 면세, 손상감세 및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대한 면세 적용의 제한을 추가한다. 또한 통관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한 재고기록 의무를 추가한다.

현행	일부개정법률 수정(안)
<p>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u>국외반출을 목적으로</u>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li> <li>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u>원화로</u> 지급할 것</li> <li>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 인도할 것</li> </ol> </li> </ol>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p>	<p>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u>삭제</u>)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li> <li>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u>삭제</u>) 지급할 것</li> <li>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 인도할 것</li> </ol> </li> </ol>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p>

<p>1. (생략) 2. (생략)</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p> <p>제38조(재고 기록 등)</p> <p>① (생략)</p> <p>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신설)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p> <p>⑤ (삭제)</p> <p>⑥ (신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94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8조(재고 기록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29조제1항제2호와제3호에 따른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	---

## 5.4.2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결제조건 개선

### 1) 현황 및 문제점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목적상 수출 및 외화획득에 중점을 두어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대상에 대하여 대금결제통화의 제한을 둔 규정이 있다. 해당 제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의 외화획득에 따른 영세율 적용 규정을 모태로 하여 유사하게 차용한 규정으로서 외화획득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나 내국물품의 반입

자체를 무역거래로서 수출로 인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1호<sup>27)</sup>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규정을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3호로 가져오면서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으로 수정하여 규정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상 “원화로 받거나”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 해석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환전하여 원화로 인출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화로 지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거주자가 원화로 지급한다는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또한 무역실무상 수출자가 환위험 회피를 위하여 결제대금을 원화로 약정하는 것이 외화획득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거주자가 원화로 송금 시 국내 약정은행에 외화로 송금한 후 약정은행에서 환전하여 원화로 입금되므로 이러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 2) 제안 내용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대상에 대한 조건 중 대금결제통화에 대하여 원화로 한정된 조건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대금의 회수 의무 준수 및 외국환거래의 관리를 위하여 송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다.

---

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현행	일부개정법률(안)
<p>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u>국외반출을 목적으로</u>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 받을 것</li> <li>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u>원화로</u> 지급할 것</li> <li>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 인도할 것</li> </ul> </li> </ol>	<p>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u>삭제</u>)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 받을 것</li> <li>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u>삭제</u>) 지급할 것</li> <li>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 인도할 것</li> </ul> </li> </ol>

### 5.4.3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조건 개선

#### 1) 현황 및 문제점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국외반출 되는 물품 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물품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후 원상태로 국외반출 되는 물품이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반입되는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규정인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3호가 2016년 1월 27일에 신설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에 대한 규정

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못하고 있어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원상태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일한 한국산 물품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출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행가능하나,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원상태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FTA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내에 보관중인 재고를 이용하지 못하고 별도로 생산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역량의 90%가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므로 대부분의 수출입 물품은 FTA협정을 적용받는다 가정하였을 때 동일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는 국제물류허브와 글로벌배송센터로서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 2) 제안 내용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국외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발행 대상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까지 포함하도록 이에 「자유무역협정의이행에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다.

현행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이행에위한관세법의특례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이행에위한관세법의특례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p>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1. (생략)</p> <p>가. 자유무역지역에서 <u>생산된</u>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 신고서 사본</p>	<p>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가. 자유무역지역에서 <u>반출된</u>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 신고서 사본</p>
---	---

## 5.5 효과 분석

상기 제안한 3가지 제도 개선 중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결재조건 개선 사안과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조건 개선 사안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또는 미비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내국물품의 관세영역 재반출 개선 사항은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제도 개선 시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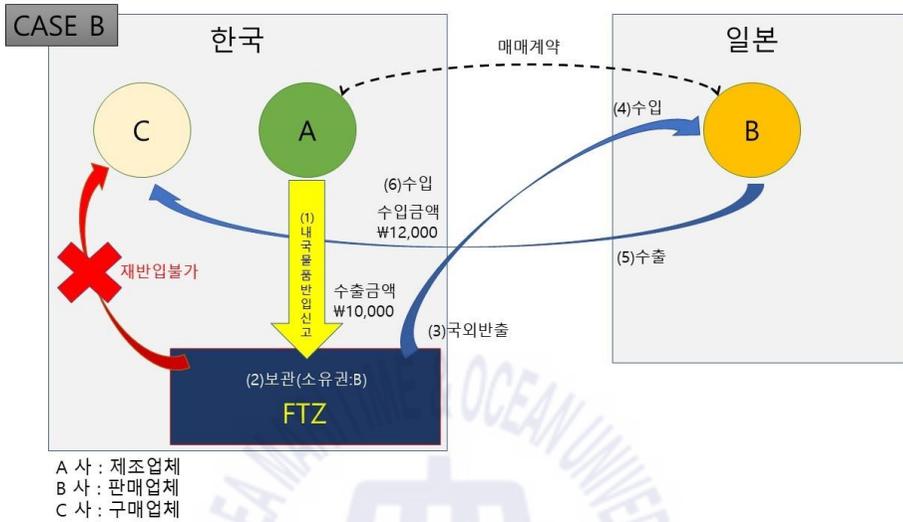
### 5.5.1 세수 확보 측면

제도 개선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는 요소는 세수확보 및 시장 불균형이다.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후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가능한 경우 내국물품 반입 시 부여한 관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시장교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으므로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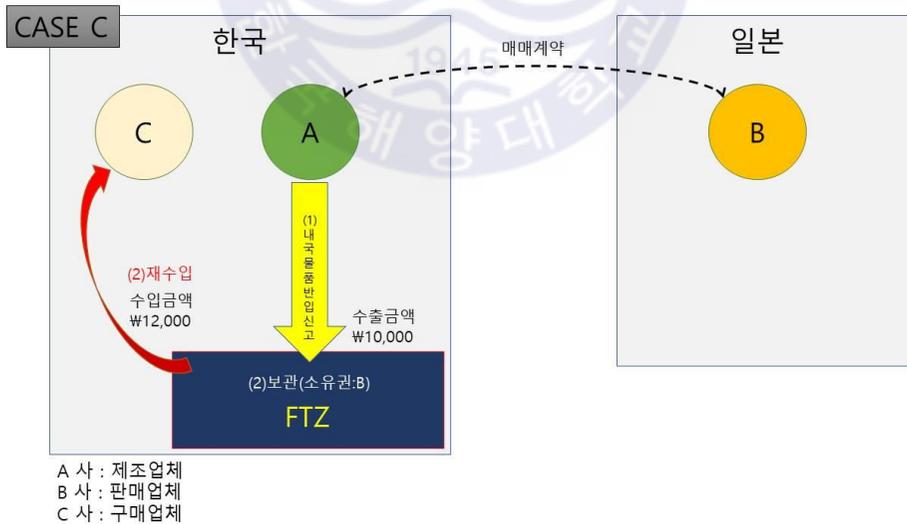
[그림 5-4]의 “CASE B” 에서 제조업체 A사는 비거주자인 B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10,000원에 판매하고, B사는 해당 제품을 C사에 12,000원 판매하며 관세율은 8%로 가정하였다. 부가가치세율은 현행과 같이 10%를 적용하였다.

A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제품을 반입한 후 제조에 사용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C사는 B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가격 12,000원의 8%

에 해당하는 960원을 관세로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인 12,960원의 10%인 1,296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림 5-4] 세액 산출 예시(1)



[그림 5-5] 세액 산출 예시(2)

[그림 5-5] “CASE C” 에서 동일한 매매조건을 가정하였을 때, A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제품을 반입한 후 제조에 사용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C사는 B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후 자유무역지역에 보관중인 제품을 수입통관할 때 제품가격 12,000원의 8%에 해당하는 960원을 관세로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인 12,960원의 10%인 1,296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기 2가지 CASE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가격 조건에서는 동일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상기 CASE에 확장하여 제조자A사의 1차, 2차 및 N차 협력사가 있거나 판매자C사로부터 1차, 2차, N차 유통사 및 소비자까지 거래가 확장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sup>28)</sup>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가되어 결국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만 C사가 재수입시 면세를 적용하거나 개인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0원이 되거나 낮게 책정되고 1차, 2차 및 N차 유통단계의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면세적용 배제 및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5.5.2 물류비 및 운송시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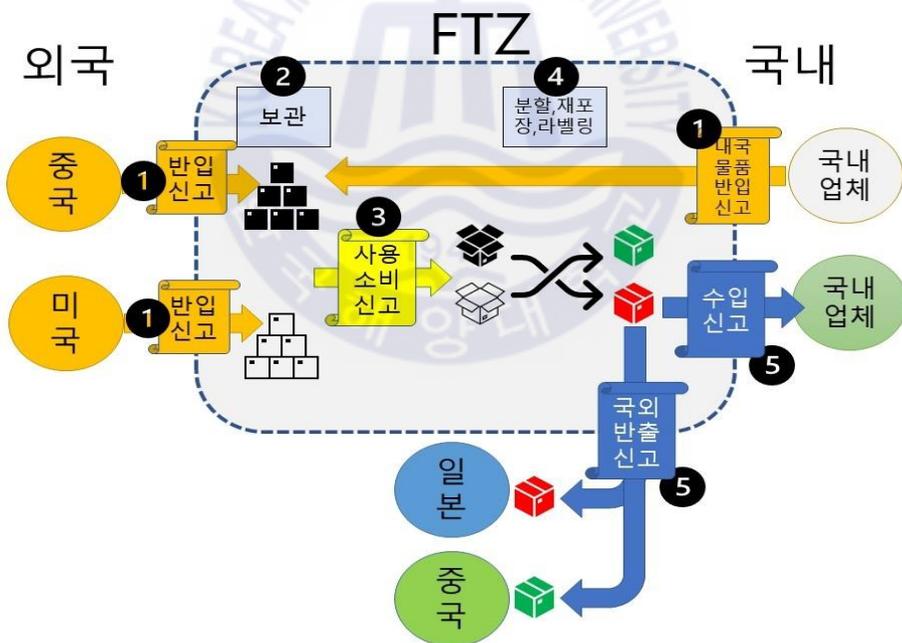
제도 개선 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부분은 물류비 절감 및 운송시간의 단축이다. [그림 5-4]의 “CASE B” 와 같이 B사가 자유무역지역 보관 중인 내국물품을 C사에게 판매 시 일본을 거쳐 다시 수입하는 CASE와 [그림 5-5]의 “CASE C” 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수입하는 CASE를 비교하였을 경우 물류비 및 운송시간에서 명확한 효과가 발생한다.

28)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 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물류비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일본까지의 왕복운임, 하역비 및 보관료 등 물류와 관련하여 비교적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운송시간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일본까지 국외반출통관, 선적, 해상운송, 하역 및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일본에서 한국까지 재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매우 큰 효과로 나타난다.

### 5.5.3 화물 관리 측면

글로벌 기업인 비거주자가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여 국제물류허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사용소비신고를 하거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재고로 통합하여 자유롭게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5-6] 통합재고관리 절차

다만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한 물품은 국내로 출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한국 내 판매용은 일본 등 주변국으로 국외반출

하였다가 재수입하여야 하므로 완전한 통합관리가 어려우며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별도 재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가능하다면 [그림 5-6]과 같이 외국·내국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통합하여 자유롭게 재고 관리가 가능하고, 판매처가 국내외 여부 관계없이 출하가 가능하므로 외국·내국물품을 구분없이 통합재고관리 가능하다. 또한 외국·내국물품 관계없이 분할·합병, 라벨링 및 재포장이 가능하므로 작업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할 수 있다.

## 5.6 시사점

외화획득 및 수출의 장려에 중점을 둔 현재 자유무역지역 제도 하에서는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영역 재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이 제도상의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및 국제물류유치를 유도하면서도 자유무역지역 설립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내국물품 반출을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목적과 무관한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에서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한 물품에 대한 관세영역 재반출은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국물품의 반출에 대해서 일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도를 제한하는 규제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영역으로의 재반출 부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17년 9월 22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한 국내 재반출을 허용하고자 하였으나 과세형평 및 통관질서문란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개정되지 않았다.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세법 상 일부 면세 규정의 적용을 제한을 추가하면 과세형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관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한 재고기록 의무를 추가한다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일부개정법률수정(안)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았을 때 제조사, 판매자, 유통사 및 소비자까지 거래가 확장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동일하며, 관세의 경우에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추후 수입시 다시 과세하게 되므로 세수확보에는 차이가 없다.

물류비 및 운송시간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해외를 거쳐 재수입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운임, 하역비 및 보관료 등 물류 관련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국외반출통관, 선적, 해상운송, 하역 및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해외에서 한국까지 재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매우 큰 효과로 나타난다.

화물관리 측면에서는 외국·내국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통합하여 자유롭게 재고 관리가 가능하고, 판매처가 국내외 여부 관계없이 출하가 가능하므로 외국·내국물품을 구분 없이 통합재고관리 가능하다. 또한 외국·내국물품 관계없이 분할·합병, 라벨링 및 재포장이 가능하므로 작업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할 수 있다.

기타 부수적인 제도 개선안으로서 수출 및 외화획득에만 중점을 둔 대금결제 통화의 제한 규정을 개선한다면 자유무역지역을 통한 거래를 더욱 원활한 무역 거래로 보장할 수 있게 되며, 자유무역지역에 보관을 목적으로 반입된 후 원상태로 국외반출 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해

외 수입국에서 낮은 관세율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국제물류허브와 글로벌배송센터로서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글로벌기업들의 국제물류허브와 글로벌배송센터의 유치가 증가하게 된다면 해당 물류업무를 위하여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더욱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외국인투자가 유치될 것이다. 물동량의 증가는 제조업 등 국내 산업의 발전과 매출 증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단순 운송, 하역 및 보관뿐만 아니라 포장, 라벨링 및 조립등과 같은 부수적인 가공작업까지도 함께 유치할 수 있으므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 제 6 장 결 론

### 6.1 연구요약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는 한 국가의 영토 중 일정지역에 조세 감면, 각종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수출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을 말한다. 1970년대에 외국의 자본 및 선진기술을 획득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수출자유지역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자유무역지역 제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외국인투자유치 및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경제특구정책도 1998년에서 2004년까지 단기간에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및 종합보세구역 등 경제특구가 난립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혼란을 야기하며 외국의 경제특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자유무역지역제도는 수출자유지역을 시작으로 약 50년간 2번의 의미 있는 개정만 있었는데, 특히 2004년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 및 물류업 등이 연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하여 기존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였으나, 최근까지도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체가 대부분이며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물류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정책적 목적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어렵다.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하였을 때도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은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은 최근 성장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기능과 역할의 차이로 인하여 통합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각각 별개의 목적으로 특화하는 것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제도로 최근 성장세에 있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화물관리절차를 분석하였고,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서 수입물품 가공 후 국내외반출 모델, 수입물품 분할·합병 후 보세운송 모델, 전자상거래 글로벌배송센터 모델 및 비거주자 재고관리 모델을 분석해 보았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개선 사항은 반입된 내국물품의 재수입에 관한 개선안이다. 자유무역지역의 개념은 경내관외(境內關外)정책에서 유래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바 자유무역지역에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수출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야 하고,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된 내국·외국물품은 수입통관을 거쳐 관세영역으로 반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관세선을 기점으로 양방향 물류가 가능하였을 때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제도에서는 반입된 내국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보관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을 거쳐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개선 사항은 보관을 목적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한 결재통화에 관한 개선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상 외화획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을 차용한 조건이므로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취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불어 결재통화의 제한은 무역거래의 원활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이므로 비거주자가 원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은 삭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개선 사항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에 관한 개선안이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만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원상태로 국외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를 유치하는데 저해 요인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국외반출 되는 내국물품에 대

하여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 6.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3대 경제특구 중 외국인투자자유지 실적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현실과 수출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반면 수출실적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비교하여 앞으로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성을 고찰해 보았으며,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화물관리 및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연구로 평가될 것이다.

최근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검증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안에 집중하여 해당 개선안이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업무절차에 저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실적 악화를 개선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 등 관련법 상 세부 조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비즈니스 모델 이외에도 산업별, 물품특성별 및 국가별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 필요하며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그에 따른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훈, 양지영, 김미정. 2017. 자유무역지역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맹철규, 남금천, 김진섭. “관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유무역지역(FTZ)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19 (4): 149-168.
- 박재곤, 김영민, 조재한. 2015.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 개선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 석완정. 2014. “중국 보세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전환에 관한 연구 - 상하이 종합보세구역의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 송주미. 2015.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 전략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윤상렬. 2017. “자유무역지역내 효율적 화물관리 및 신물류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성우, 송주미, 한덕훈. 2014.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원빈. 2016. 자유무역지역 관세법 및 관세행정 최적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 장근호. 2012.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 화물관리절차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최혁준. 2016. “한중 자유무역지역의 전자상거래 활용 방안.” e-비즈니스연구, 17(4), 333-350
- 함길선. 2015.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 한상현, 김태인. “국제VMI활성화를 위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25 (3): 97-109.
- 한옥순. 2018.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내 글로벌배송센터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158-197.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
- 네이버 블로그, 산업통상자원부 소통채널, <https://blog.naver.com/mocienews>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List.do?bbs\\_cd\\_n=6](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List.do?bbs_cd_n=6)